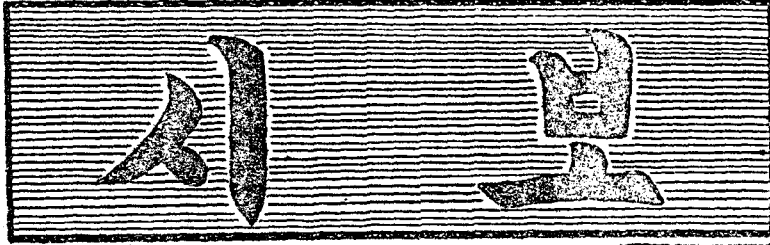


제 274 호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 
편집 : 공보실장 김진호  
전화 75-7834

1972. 8. 26.

인쇄 :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



차 례

이 영주보존조각은 마이크로  
필름으로 제작하였음.  
1972. 8. 26.  
서울특별시 시민과장

◎ 규 칙

제 1214 호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수여조례 시행규칙 ..... 3

◎ 공 고

제 183 호 서울도시계획 유수지 결정..... 4

◎ 사 령

..... 4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# 서울특별시

# 규 칙

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수여 조례시행규칙  
을 제정하여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양택식  
1972년 8월 25일

## ◎ 서울특별시규칙제 1214 호

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수여  
조례시행규칙

제1조 (목적)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 
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5조 및 제6  
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명예  
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 (이하 "위원회"  
라 한다) 의 조직 및 운영과 서울  
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시행에 필  
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 
다.

제2조 (위원회의 위원) ①위원회는  
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.  
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 
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  
촉한다.  
가. 서울특별시문화위원의 직에 있는  
자.  
나. 서울특별시정 평가교수단에 속하  
는 교수의 직에 있는자.  
다. 수도권행정 자문위원회의 직에 있  
는자.  
라. 서울특별시 소속 국장급 이상의  
공무원

마. 기타 수도권행정에 이해가 깊은 학  
식및 덕망이 있는자.

제3조 (위원회의 위원장) ①위원회에  
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제1부  
시장이 된다.

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 
의 사무를 통괄한다.

③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내무국장이 되  
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 
대행한다.

제4조 (간사와 서기) ①위원회에 간사  
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.

②간사는 총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  
원장이 임명한다.

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 
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 
보조한다.

제5조 (위원에 대한 수당지급) 심사위  
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 
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 
있다.

제6조 (위원회의 심사) ①위원회는 서  
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심사요청을 받을  
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  
이를 심사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  
을 요할 때에는 서면 의결로서 이를  
대할 수 있다.

②위원회는 전항의 심사를 함에 있어  
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서  
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7조 (위원회의 의결) 위원회의 의결  
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

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8 조 ( 회의록 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.

- 가. 개최일시
- 나. 출석위원의 성명
- 다. 심사안건과 내용 및 의결사항
- 라. 의 사
- 마. 기타 중요한 사항

② 전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날인한다.

제 9 조 ( 심의의결사항 보고 )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10 조 ( 운영세칙 )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가) 유수지 결정조서

# 공 고

## ◎ 서울특별시공고제 183 호

서울도시계획유수지결정

1. 당시 관내 영등포구 구로유수지 시설이 건설부고시 제 314 호 ( 72. 8. 4 ) 로 결정 고시 되었으므로 도시계획법 제 12 조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영등포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
1972. 8. 16.

서울특별시장

명 칭	위 치	면 적	비 고
구로 유수지	영등포구신도림동 460 번지 일대	24,025	

# 사 령

◎ 1972. 8. 8

토 목 파 지방토목기사 김 성 규

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, 2 호에 의거 감봉 3 월에 처함.

서부건설사업소 지방조무보조수 단 유 식

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, 2 호

에 의거 견책에 처함.

◎ 1972.8.12.

하 수 과 지방토목기사보 신 송 은

서울특별시소청심사위원회의  
72.8.2결정에 따라 72.6.7자  
견책처분을 동일자로 취소함.

서대문구 지방건축기원 배 석 중

서울특별시소청심사위원회의  
결정에 따라 72.6.7자 파면  
처분을 동일자로 취소함.

성 북 구 지방조무수 신 태 빈

서울특별시소청심사위원회의  
결정에 따라 72.6.7자 견책  
처분을 동일자로 취소함.

도시계획과 지방토목기사 임 행 식

포장과 근무를 명함.

한강건설사업소 지방토목기사 이 구 용  
구획정리 제 2 과 근무를 명함.

◎ 1972. 8.23.

서대문보건소 지방보건기원 김 지 한  
동대문구보건소 근무를 명함.

◎ 1972. 8.24.

종 로 구 지방행정사무관 김 경 기  
시민봉사실

지방공무원법 제 69조 1, 2 호  
에 의거 감봉 3 월에 처함.

오 영 철

기한부공무원 ( 지방건축기원보  
박철규의 군복무휴직기간중 )  
을 명함.

5급 4 호봉을 급함.

아파트관리과 근무를 명함.

서 울 특 별 시 장